

제1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기간

- 1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등급 변동,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- 1) 기관과 수급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2)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1)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중 85%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, 개인부담은 15%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3)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 경감하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다.
- 4) 비용부담의 방법
 -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 -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.
- 5)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1) 권리
 - (1) 수급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- (2)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 - (3)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
 - (4)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- 2) 의무
 - (1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 - (2)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
 - (3)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 - (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의무
 - (5)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5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4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- 5)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6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7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